

식민지 시대 관습(慣習)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김윤정*

차례

1. 서론
2. 여성의 이혼청구권과 젠더 통제
3. 여성의 법률적 위상과 젠더 정의(正義)의 모색
 - 3.1. 젠더 감수성의 발현과 '분배'의 원칙
 - 3.2. 법적 배제의 여성과 '인장'의 원리
4. 결론

〈국문초록〉

식민지 시대 여성의 이혼 청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혼은 신여성들의 퇴폐와 방종을 비난하기 위한 적절한 소재로 부상했다. 특히 이혼의 원인을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연관하여 문제 삼음으로써 결혼 제도를 이탈하거나 부정(否定)하는 여성들을 비정상성, 부도덕성으로 단정하고 그 사회적 위상과 주체로서의 정치성을 거세 또는 배제하였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이선희의 소설은 법과 제도에서의 젠더 평등을 요구했다. 이선희는 당대의 사회에 만연한 젠더 정의의 실현 불가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젠더 불평등을 여성의 일상을 통해 고찰하고 평등의 재정의, 재분배를 요구한 것이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강사

이들때면, 이선희의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몹이 없는 자들을 스스로 재현해내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지되지 않은 영역을 보이게 하고, 배제되어 있었던 존재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선희 소설은 여성의 이혼 청구권을 소재화 함으로써 비가시적으로 강화되었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여성인물을 통해서 여성의 관점으로 포착한 근대 결혼법의 모순과 법의 한계를 비판함으로써 문학의 젠더 정치성을 재현해내었다. 이는 개인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한정된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며, 남성적 담론으로 인식되어 온 법률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젠더 정의의 실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 이선희, 이혼, 분배, 인정, 젠더, 정치성

1. 서론

식민지 시대라는 제국주의의 통제와 법이라는 근대의 규율, 그리고 관습이라는 봉건적 인식에 대해 정치적 타자인 동시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였던 여성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봉건적 결혼 관습에서 또 근대적 법 제도 내에서, 나아가 제국주의적 사상의 강력한 통치하에서 여성의 권리나 권한은 남성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규범화되어 온 젠더 불평등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민사령>의 결혼 관련 법률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랜 풍속으로 지속된 젠더 관습이 법 제정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젠더 차별과 억압은 비가시적인 상태로 더욱 심화되었다. 젠더 중립적 가치를 함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근대의 법은 젠더 차별적 규율로써 여성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되었다. 여성 인권에 대한 법률적 고려

를 통해 젠더 정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 지식인들 역시 이러한 젠더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는 근대적 법률과 봉건적 규범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여성에게 이중 억압의 젠더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식민지 시대 조선의 친족법은 젠더 질서를 주요한 원리로 하고 있었다.¹⁾ 따라서 <조선민사령>의 내용 및 결혼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젠더 문제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법이 누구의 정신과 누구의 해석을 반영하는가 하는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당대의 법 규정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률적 여성의 위상과 법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여성문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여성 소설 텍스트들은 지배적인 관습이 내포하고 있는 결함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근대적 결혼제도가 조선사회에 안착되는 데는 계몽적 저널리즘과 자각한 신여성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아직까지 근대적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근대적 결혼을 구체적인 사례로써 보여준 것은 소설 텍스트들이었다.³⁾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근대 여성 지식인들은 소설 텍스트를 통해 일반 여성의 계몽적 자각을 유도하고 부당한 관습과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고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 1) 당시 조선의 민법은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였다. 그런데 일본 민법, 특히 가족법은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는 가장권에 흡수되어, 여성은 법적 무능력자로 간주되었다. 처는 남편의 가장권 아래에서만 존재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젠더질서는 일본 가족법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의 관습 조사 또한 일본 민법상의 가족제도에 내재된 젠더체계에 입각하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홍양희, 양현아, 『식민지 사법판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사회와 역사』 제7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171쪽 참조)
- 2) 김선희, 『여성의 범주와 젠더정체성의 법적 수행』,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12, 15쪽 참조.
- 3) 장두식, 『근대적 결혼제도 정착과정과 소설의 관련양상』, 『국문학논집』 제21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2~53쪽 참조.

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의 젠더 정치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선희(李善熙)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젠더적 법 인식과 해석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선희는 1934년 『중앙(中央)』에 단편 「가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이후 1946년에 남편 박영호의 뒤를 따라 월북하기까지 소설과 수필, 평론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식민지 시대 제2기 여성 문학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⁴⁾ 그럼에도 이선희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작품의 편수가 적었다는 점과 월북작가라는 점에서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선희 소설에 대한 문단의 평가는 도시의 ‘낭만성’⁵⁾과 ‘엑조티시즘’ 경향, 여성의 치밀한 ‘심리묘사’, 일상에서의 여성 욕망과 갈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⁶⁾ 이는 이선희의 소설이 이전 세대의 혁명적, 해

-
- 4) 이선희는 1933년 <개벽>사에 입사하여 기자로서 활동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잡지 <신여성>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1936년 6월 <신가정>에 「오후십일시」를 발표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선희는 1945년 12월, ‘조선문학동맹’의 결성에 불만을 품은 남편 극작가 박영호를 따라 1946년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북 전 중편 「창(窓)」을 서울신문에 연재(1946.6.26.~1946.7.20.)하였다. 이선희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1편, 중편 2편, 단편 10편, 콩트 3편으로 총 16편의 소설과 40여 편의 수필, 10여 편의 잡문이 있다.
- 5) 이선희 소설의 낭만성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의 창작 방법으로서 지향점이기도 했다. “무슨 主義니, 創作方法이니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겠지 만은 우리 女性作家들은 그러한 文藝指導理論과는 沒交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그 따위 딱딱한 문제야 男性藝術家들이 수두룩한데 그리로 미루워도 충분하지요. 우리는 다만 자기의 개성만을 잘 살려보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딱딱한 작품을 싫어합니다. 「빨작크」니 「뭇팻상」같은 작가의 작품은 읽으면 골머리가 압혀요. 러시아의 작가들 작품도 대개는 꺼칠꺼칠하여서 도모지 「藝術性」이 없는 듯 싫어요. 꼴키-의 「母」는 읽다가 고만뒀어요. 아무리 世界觀을 논하고 創作方法을 말하드라도 어떠한 制限 밑에서 비쳐지는 「藝術品」은 반신불수가 아니면 藝術性을 잃어버리고 빼만 남흔 앙상한 骨薰品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浪漫」性을, 나는 소설의 가장 중요한 要素로 봅니다. 더구나 女流作家인 나로서는 선이 부드럽고, 읽어서 매끈매끈하고 浪漫的의 여야 사람의 힘을 끄는 魅力이 큰 줄 압니다. 그렇게 비쳐 놓은 작품이 評論家가 볼 때에는 어느 主義와 어느 創作方法에 合當한다고 말하드라도 그것은 相關할게 없겠지요.”(『女流作家訪問記(2)-情熱과 浪漫 속에 잠긴 李善熙女史』, 『삼천리』 제8권 제11호, 1936.11.1., 169~170쪽)

방적 여성에 대한 관심과 달리,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 주체 문제와 문화적 취향을 극대화한 개성적 글쓰기에 몰입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선희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덕을 따르며, 동시에 개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이해가 어떻게 교차하고 또 대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젠더 차별에 대해 정치적 발화를 하는 이선희 문학의 젠더 정치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젠더적 관점에서 독해할 때, 이선희의 문학은 관습과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차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젠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라는 시대가 도출해 낸 경제와 문화에 대한 각성이 법률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젠더 정의를 요구하는 여성의 자의식이 이선희의 소설 속 인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투쟁에서 계급, 젠더, 인종, 장애, 연령, 섹슈얼

6) 이재선은 “그의 작품의 구조를 공상성과 액토티시즘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그의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루는 것은 남성원리로부터의 여성의 피해자의식과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재 확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에는 여인의 불행이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439~441쪽)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선희의 소설을 고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정자, 『이선희소설연구 : 인물의 삼각구조와 상징을 중심으로』, 『원우논총』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5.

김미현, 『성장과 생존의 두겹쓰기-이선희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이선옥, 『이선희-집과 거리의 긴장의 미학』,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7.
오태호, 『여성적 욕망과 남성적 현실 사이의 거리』, 『이선희소설전집』, 현대문학, 2009.

7) 젠더 정의는 평등한 참여와 재분배를 의미함과 동시에 여성성의 인정과 재평가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젠더 정의에 관한 논의들은 젠더적 관점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접목을 가능하게 한다.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시대의 정의』, 김원식 역, 그린비, 2010, 195쪽 참조)

리티 등과 같은 요인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차이’로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에서 지배집단과 차이가 있다고 간주된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고 배제를 당하고 있다. 주변화 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심각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이처럼 주변화 되고 배제 당하는 차이 집단을 사회 구조적 차이 집단으로 간주하며,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부정의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분배(distribution)와 인정(recognition)을 통합한 정의론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범철학과 사회투쟁의 각 영역에서 개인주의적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한 ‘분배’와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우선성을 부여한 ‘인정’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개념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존 롤스(John Rawls)와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분배 정의론과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악셀 호네스(Axel Honneth)의 정체성 인정이론을 종합하여 분배와 인정을 통합하는 사회정의론을 주장하였다.⁸⁾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사회정의를 위한 요구는 더 이상 ‘분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자원이나 부의 분배(distribution)뿐만 아니라 인정(recognition)의 정치적 요구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선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성인물들을 분석하고, 또한 젠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적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로서 당대 여성의 위상 변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이선희 문학의 젠더 정치성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시대 조선의 관습법의 의미가 무엇이며, 실제로 근대의 친족법이 젠더 차이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었

8)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 검토』, 『철학탐구』 2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 이은경,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분석하며』,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2010 참조

고, 어떠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규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봉건적 젠더 규범의 답습이라는 기존의 작가적 한계에서 벗어나 이선희 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여성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여성의 이혼청구권과 젠더 통제

결혼제도가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른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사회가 성(性)에 부과하는 금기와 규율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혼제도는 각 사회의 성(性)에 대한 통제의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 제도가 변화하였다는 것은 성(性)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20년대 초기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개혁 대상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성의 법적 권리와 가정 내의 법률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⁹⁾ 그 중에서도 근대적 결혼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일처제로 남녀 결합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봉건적 조선 사회에서 축첩이 허용되었던 것이 근대적 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확립된

9) 혼인 제도와 관련하여 혼인 연령의 법제화, 축첩금지, 법률혼주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청구권 등이 도입되는 등 어느 정도 근대적인 법제가 마련되었다. 1922년 개정 민사령에 의거하여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미만인 경우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혼을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1915. 8.7 민적사무의 취급에 관한 관통첩, 1922년 제령 13호에 의해 일본 구민법 765조, 780조 및 781조가 적용되어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로 하였다.) 축첩제도 1915년 8월 관통첩 249호에 의거 첩의 입적신고를 금지하였으며, 1922년 제령 13호에 의해 “혼인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에 의하여 기 효력이 생함”이라 하여 사실혼주의에서 신고혼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제도적으로 중혼이 금지되고 법률상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었다. 특히 이혼의 자유를 남녀에게 같이 주는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여성에게 이혼청구권(일본 민법 제813조에 규정된 이혼 원인을 의용)을 인정하였다. (전경옥 외3인, 『한국여성정치사학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71~72쪽)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호적상의 처(妻)를 한 명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며, 이전과 같이 첩(妾)을 호적에 올릴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시대에 용인되었던 사실혼주의에서 근대적 법률혼주의로 성(性)에 대한 법률적 통제와 규율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그밖에도 식민지 근대 조선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 봉건적, 가부장적 결혼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의 결혼법은 근대적 사상인 남녀평등이라는 가치를 옹호하며, 지금까지 법 담론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의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여기서 눈에 띄는 여성의 법적 권한은 바로 이혼청구권이다.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의 영육일치에 근거한 연애 도덕론 즉, 연애에 기초한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자유 이혼론으로 연결되었다.¹⁰⁾ 조선 사회에서는 비록 남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다하더라도 일부종사(一夫從事)를 부녀(婦女)의 최고 미덕으로 삼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풍속상으로도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것이다.

자유이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이혼 청구 사례는 격증(激增)했다. 이혼 청구 건수의 증가에 대한 기사는 연일 신문에서 보도되었고, 이혼 격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급증하였다.¹¹⁾ 이혼 청구와 소

10) “사람은 長壽를 약속할 수 업슴과 가티 永久의 연애를 약속할 수가 업다”하는 것이다. 곳 두 사람 사이에 연애가 업서진 경우 또는 二人 중 一人이 상대자에 대하여 연애를 失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이나 습관이 나를 물론하고 一方에 의지를 억제하고라도 그 결혼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말 無理不法이다. (노자영, 『女性運動의 第一人者-엘렌케이』, 『개벽』 제8호, 1921.2.)

11) 결혼제도의 위기- 함남도에는 최근 수년간 갑자기 리혼(離婚)사태가 나서 일반의 주목을 끌고잇는데 금년에는 특히더만허 일년동안 함흥법원에 제소(提訴)된것

송의 증가, 이혼 가정의 증가는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비난과 냉소, 혹은 옹호와 지지 등 매우 복합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윤리와 기강(倫紀)의 문란이라고 빈축(嗔蹙)하고 혹은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냉소하며 또는 해방에 향하는 정도(程途)의 일 현상이요 과도기의 필지적 귀결이라고 낙관¹²⁾하기도 하였다.¹³⁾ “남편의 부족을 들어 여자 편에서 고소함이 다수¹⁴⁾라는 기사에서와 같이, 상당수의 기사에서 다루는 이혼 소송의 내용은 대부분 여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여성의 자각과 주권 획득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기사의 내용을 면밀하게 독해해 보면, 여성의 주권 신장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신문에 보도되는 이혼 기사를 보면 저널리즘의 젠더 편향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2월 20일자 『동아일보』의 『이혼도 가지가지』라는 제목 하의 묶음기사에는 당시 제기된 이혼 소송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내용에 앞서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려는 의도를 보인다. 몇 개의 사건 내용이 짧막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신문사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에 의존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혼 소송의 여러 사례가 모두 이혼의

만 일백십사건의 다수에 달한다 이것은 작년의 팔십사건보담도 오히려 삼십건의 격증이며 동법원민사합의부 총집수건수 삼백팔건에 대하여 삼분의 일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소송의대부분은 여자들편에서 남편을 버리려는 용감한 당세 「노라」들로서 더욱이 일반의 놀람을 사고있다한다.(『咸南에 離婚激增』, 『조선일보』, 1937.1.7)

12) 『이혼, 파혼, 독살, 기아』, 『시대일보』, 1924. 9.13

13)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일부일처제와 같은 근대 사조들을 근거로 이혼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혼이나 조혼과 같은 봉건적 인습 탈피를 위해 단호하게 이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때문에 1920년대에는 이혼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고, 자유 이혼론에 대한 적극적 주장과 옹호가 우세하였다. “조선에도 이혼이 늘어간다 함은 곧 조선 사람도 행복을 구하여 새 도덕을 세우려는 용기가 늘어간다는 말”(『주목할 이혼 증가』, 『동아일보』, 1924.3.26)이라며 이혼 소송의 증가는 곧 여권의 신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320쪽)

14) 『동아일보』, 1921.9.30.

원인을 여성에 두고 있으며, 여성의 방종과 부정, 풍기문란 등의 행위에만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소재목을 보면, “딸까지 난 妻, 외인 남자에 눈 떠”, “一去無消息, 친정 간다고 외간 남자와 혼인”, “행실이 부정, 이런 妻와 못 살아, 친정 옆집 남자와 외도”, “남편을 고소, 이런 계집도 있소”, “딴 남자 눈 떠, 나는 기동서방 셈, 혼인 후 간통 일삼아” 등이다. 여성의 이혼 청구 소송의 증가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은 오히려 여성을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유’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컨대, 이혼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비판적 여론이 최종적으로는 근대적 여성의 방종과 허영으로 그 문제를 성급하게 결론내고 있다는 것이다.

구식여자는 아모리 자기 남편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있슬지라도 그저 참고 참아서 한번 엇던 남편을 엇는다면 자기 생명이 끈어지는 날까지 그 남편을 위하여 전신을 희생까지 하지만은 신식여자는 대개 그러한 관념이 薄弱야야 그 남편이 자기에게 무슨 불평이나 불만을 준다면 곳 풍파를 이르켜서 극단으로 가면 이혼문제까지 주창하여 일가정을 破케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誌上討論 現下 朝鮮에서의 主婦로는 女敎出身이 나혼가 舊女子가 나혼가?!』, 『별건곤』 제16-17호, 1928.12)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생활이 복잡하게됨에따라 가속도로 느러가는 인사관계 소송-작년일년동안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된 인사관계소송만 이백이십여건에 달하였는데 이것을세별하여 보면 리혼(離婚) 사건이 일백삼십삼건 친자(親子)관계 소송이 삼십오건 양자관계가 십일건 서자(庶子) 사생자(私生子)인지관계 소송이 아홉건 위자료 부양료 청구가 설혼한건으로 리혼사건이 단연뛰어나게 만흔것이 자못일반의 주목을 끈다한다. 더욱이나 리혼사건의 원고측을 조사하여보면 남자보다도 해마다 여자편이 만혀저가는것도 자못재미스러운 현녀상으로 종래와가티 한번시집을가면 재기를 아

니하겠다는것과가튼 봉건적관념이 희박하여지는관계도만껏지만은 한편으로 는 근래의녀자들이 분수에 지나치는 허영심에떠서 방중한 생활을 하려하는 데 원인이 더만흔것가티보인다고한다.

(『離婚의 先鋒은 女性』, 『조선일보』, 1938.1.27.)

예문에서와 같이, 여성의 이혼 청구는 “여자 사회의 풍기가 문란하여 특하면 이혼을 신청하는 시대”¹⁵⁾라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¹⁶⁾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여성은 차별을 당했다. 근대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조선민사령> 역시 여성의 자유에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민사령>의 법령 고지와 해석에서 여성은 여전히 제한적 주체였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여성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¹⁷⁾ 여성에게 주어진 ‘이혼청구권’의 경우, 여성에게 자유이혼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여성의 이혼청구는 자유롭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젠더적 질서에 기준한 관습

15) 『滑稽的 離婚申請』, 『매일신보』, 1912.7.16

16) 당시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은 흔히 “禽獸”에 비유되었고, 그 행위는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비난되었다. 심지어 이러한 여성들과는 서로 교류하지 말아야 한 다거나 혹은 당국에서 “엄중처제”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편무적(偏務的)인 도덕관에서 부부파탄의 책임은 언제나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여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선 이래의 사고방식과 편무적 부부관이 여전히 공고하게 가족 내 질서로 강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해석할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아내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 남편을 배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들의 행위가 그저 웃음거리이거나 풍기문란, 혹은 허영심의 발로 정도로 의미 폄하되었던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불평등한 유교적 도덕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 박사논문, 2013, 171~174쪽 참조)

17) 예컨대, 1928년 10월 26일 고등법원판결을 보면 “남편이 축첩한 것만으로는 본처에 대하여 동거할 수 없는 중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1943년 10월 26일 고등법원판결에서는 “축첩은 원칙으로 본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 되어 이혼원인이 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축첩하는 경우에는 이혼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축첩을 허용하는 판결로서 여전히 남성중심적 사고 하에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은희, 『이혼의 자유와 그 한계』,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137쪽)

법이 법령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에 있었고, 나아가 법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젠더적 규범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 인식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식민지 시대 여성의 이혼 청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혼은 신여성들의 퇴폐와 방종을 비난하기 위한 적절한 소재로 부상했다. 특히 이혼의 원인을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연관하여 문제 삼음으로써 결혼 제도를 이탈하거나 부정(否定)하는 여성들을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단정하고 그 사회적 위상과 주체로서의 정치성을 거세 또는 배제하였다. 결국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불온한 여성으로서의 낙인은 ‘자유’ ‘이혼’ ‘여성’에게 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유 이혼 여성’이라는 낙인에는 근대적 법 제도와 봉건적 젠더 규범이 함께 적용되어 있다. 즉 근대적 규율과 전근대적 규범이 이중으로 여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구속의 양상은 식민지 시대의 근대법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법적 주체는 젠더 중립적이며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젠더와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들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개정,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반드시 젠더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중립성을 가장한 법 기술이 여성 관점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공평 초래하고 있었다.¹⁸⁾

3. 여성의 법률적 위상과 젠더 정의(正義)의 모색

3.1. 젠더 감수성의 발현과 ‘분배’의 원칙

여성에게 결혼은 자아 정체성 자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나’라

18) 김선희, 앞의 논문, 16쪽.

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에서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라는 타자와의 관계 망 안에서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기존의 자아와 갈등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결혼 생활은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각성하게 함으로써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체제의 젠더 모순을 직시하면서 젠더 감수성¹⁹⁾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젠더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 내재하는 젠더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문제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개선의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적 의지를 의미한다. 결혼 관계에서 젠더 감수성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 방식은 혼인 관계의 중단, 곧 이혼이다. 여성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서 젠더 관습으로 묵인되어 온 여성의 젠더 감수성은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던 봉건적 가부장적 현실에 대해 개조와 혁신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여성들은 봉건적, 인습적, 모멸적, 위협적인 결혼생활로부터의 자기 구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였다. 여성에게 이혼은 자신의 삶을 변혁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며, 근대적 법질서

19) 젠더 감수성은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이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과 사회조직문화, 그리고 주체성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성찰 하고 더 나아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킨다. (김영옥 외, 『사회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 성 영향 평가』, 여성가족부,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 불리고 있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사회적 남녀 유별화에 따른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즉 젠더 이슈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남녀의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성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식과 이해관심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젠더감수성은 흔히 젠더의식(Gender awar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젠더감수성과 젠더의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젠더의식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은폐되어 있는 젠더 이슈를 인지하는 보다 큰 능력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매뉴얼에 서는 젠더 감수성을 남녀 간의 격차에 대해 보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탐구적인 젠더의식에 이르기 위한 기초 의식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강선미,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5)

에 의지한 법적 젠더 수행이었다. 또한 이혼을 ‘하다’의 실천력, 자발적 행위성, 능동성과 적극성은 가정 내 불평등과 젠더적 차별 인식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이선희의 소설에는 식민지 시대 여성들의 젠더 감수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이 나타나 있다. 단편 소설 『계산서』(조광, 1937.3)는 안락하고 낭만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여성인물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냉정하게 재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술적 자아인 ‘나’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집을 나왔고, 지난 일주일동안 생사(生死)를 넘나들며 익숙한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 어느 ‘백계노인’(백계 러시아인)의 집에 유숙하게 된 ‘나’는 ‘황막한 별판’의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몽롱한 의식 속에 오히려 더 강하게 두드러진 기억의 줄을’ 더듬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분명하게 재인식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신의 불행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며, 부당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즉 이 작품은 결혼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안정과 행복의 이면(裏面)을 차갑게 직시하며, 자신의 불행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책임을 남편에게 부과하겠다는 점에서 여성의 젠더 감수성을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나’의 결혼 생활은 낭만적 연애의 연장(延長)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야릇한 단골말이 많았다.” 남편은 늘 ‘나’에게 애칭을 부여했다. 남편은 “어떠한 사물을 대하든지 그중에서 가장 구염성스럽고 재롱스럽고 얌전하고 알뜰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짜고짜 거기다 나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다.”²⁰⁾ ‘있쩍찌이, 뽀르대, 곰이, 애그맹이, 빼똥이, 강아지 등’의 애칭은 ‘나’에 대한 남편의 진심어린 애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 위기를 맞는다. 임신 중이었던 ‘나’는 아이를 잃었고 또 한쪽 다리를 잃었다. ‘나’는 ‘절름발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도 또 부정하지도 못한 채 심리적으로 불

20) 오태호 엮음, 『이선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09, 60쪽.

안정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나’는 공연히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면서 점점 성미가 고약해갔다. 그런 ‘나’와 달리 “남편은 여전히 저녁이면 빈대떡을 사들고 들어오는 극히 선량하고 친절한 가장이었다.”²¹⁾ 그러한 남편의 변함없는 모습은, 절름발이가 된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었다.

영원히 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할 피난처- 느긋한 해초의 향기를 풍기는 햇빛의 복지- 길들지 않은 남양의 새와 같은 내가 마음껏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무인도-.

이러한 섬이 곧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이 섬에서 내가 다리 하나쯤을 잃었다고 그 자유로운 영토가 줄어들 리가 있을까. 타조와 같이 활발한 내 즐거운 장난을 거절할 이유가 될 것인가.²²⁾

그런 이들 부부 관계의 파탄은 남편의 외도를 화자인 ‘나’가 의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새 넥타이를 매고’ 외출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남편의 외도를 단정 짓는다. 물론 이 작품에서 남편의 외도는 확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이 남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서술보다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는 ‘나’의 주관적 독백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의 진실성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분명한 것은 ‘나’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편으로부터 귀움을 받고,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 하는 데에서 여성의 행복을 찾았던 ‘나’가 ‘아내’라는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장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결혼 생활에 내재된 남녀의 불균형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집을 떠나온 후의 ‘계산’에서 확인 하게 된 자신의 결혼 생활은 “모조(模造)가정(家庭) 혹은 소형(小形)가정(家庭)”²³⁾이었다. 이는 낭만성의

21) 오태호 엮음, 앞의 책, 57쪽.
 22) 오태호 엮음, 위의 책, 58쪽.
 23) 오태호 엮음, 앞의 책, 53쪽.

극대화하면서 허구적인, 비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의미한다. 가정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남편이 부여하는 애칭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남성에게 의존적인 결혼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후에도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기에 자신의 불구성마저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여성의 주체적 결혼 생활은 배제되고 남성에 의해 불안하게 유지되는 결혼 관계를 의미한다. 즉 ‘나’는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 “어릿광대와 같이 유쾌”했지만 ‘나’는 “대단히 험프고 미옥한 주부였”으며 “쌀값보다는 과자값이 더 많고”, 생필품보다는 “장난감이 더 많은” 살림살이였다.²⁴⁾ 이러한 회고(回顧)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면서 반성이고, 또한 남편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 생활은 언제든지 다시 남편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거울을 바라볼 때 “너무도 초췌한 내 모양과 너무도 두드러지게 완전한 그의 모양”²⁵⁾의 극단적인 대비는 ‘나’의 불구된 다리와 남편의 온전한 다리라는 외형적 불균형을 의미하며 동시에 가정 내 부부관계에서 남성에게만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봉건적 결혼 제도의 젠더 불균형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절름발이 여성’은 아내라는 위치에서 여성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여성의 자아와 존재성이라고 하겠다. “균형을 잃은 것은 언제든지 완전한 것은 아니다”²⁶⁾라는 ‘나’의 인식은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게 된, 불평등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쯤 되고 보면 내 목숨 또는 우리의 생활은 파산인 것이다. 나는 어떤 의미로나 이 이상 더 견디어 나갈 도리가 없다. 하면 나는 인제 우리 생활의 총결산을 가장 정직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무릇 한 개의

24) 오태호 엮음, 위의 책, 53쪽.

25) 오태호 엮음, 위의 책, 56쪽.

26) 오태호 엮음, 위의 책, 52쪽.

부부생활이 해소되는 때는 그 아내된 자가 그 남편된 자에게 변상해서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중략)

나는 내 남편도 나와 같이 다리 하나가 병신 되기를 바랐다. 남편의 다리 하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다리 하나쯤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그의 목숨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을 것 같다. 이것은 내 계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된 자의 계산서일 것이다.²⁷⁾

남편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근대적 이혼에 대한 여성의 이해와 적용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하여 결혼생활의 불가능성을 인지한 여성이 혼인 관계 중지를 결심하고, 아울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성에게 부과한 것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봉건적 가족 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의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계산’의 의미는 젠더 정의 구현의 한 원칙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경제적 분배 원칙에서 자신의 ‘절름발이’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적절한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젠더 정의 구현의 중요한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분배의 원칙은 평등을 전제로 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적용이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남녀의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 후, 분배의 원칙은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는 근대적 사고와 가치의 실천이며, 법 앞에서 남성과 평등하다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한 여성의 적극적인 법률 해석이며, 적용인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나’는 그 분배의 뒤편에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결혼 생활 내에서의 여성의 위상을 자각하고, 남편에게 젠더 불평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변화된 근대적 여

27) 오태호 엮음, 앞의 책, 63~64쪽.

성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의 설계』(매일신보 1940.11.17.~1940.12.30.)에서 역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결혼 생활 5년 차인 ‘소라’와 ‘청재’는 근대적 자유연애를 신봉하며 자유결혼을 실천한 부부이다. 그들은 근대의 문화를 추구하는 신지식인이지만 상당히 소비적이고 방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 개조, 혁신과 해방을 추구하던 선구자적 근대지식인들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들은 쓰고 싶은 많은 돈을 벌 줄 모르고, 사방에서 구걸을 해서 생활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문화의 향유를 추구하며 나태하고 무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 청재는 공과대 수석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병적 게으름으로 인해 가정 경제의 책임을 외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기만 하면 돈 타령”²⁸⁾을 하였지만, 이들 부부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은 청재가 ‘여순옥’이라는 이혼녀와 밀월여행을 떠난 것 때문이다.

여순옥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여성이다. 그녀는 청재의 지성에 매력을 느껴 경제적 여유로 환심을 얻는데 성공한다. 아내인 소라는 여순옥이 청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데에는 문제 삼지 않았다. 여순옥에 대한 청재의 무관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순옥과 청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여순옥은 청재의 남성적 미모, 세련된 피로(疲勞)와 우울과 교만, 자기를 무시하는 데 매력을 느꼈고, 청재는 여순옥의 궁상맞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다소 ‘하이칼라한 기분’을 좋아했다. 서로서로의 취할 점이 있는 까닭에 관계 유지 가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소라에게 여순옥은 자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상대였기 때문에 청재와 여순옥의 잦은 만남을 묵인(默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소라가 청재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결혼 생활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것은 바로 청재와 여순옥의 밀월 여행, 외도라는 사건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8) 오태호 엮음, 앞의 책, 261쪽.

“그런데 이번에 여순옥이하구 어딜 갔됐어요 내가 온양온천에 가서 발 끈 뒤졌수. 나도 한 몫 끼려고- 사람을 이렇게 한대하는 수가 있나 난 더 못 참어요. 두말할 것 없이 내일 내가 간 담에 법적으로 이혼수속 해 보내 시오.”²⁹⁾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여성인물인 소라가 남편의 외도를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부부 관계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작품이 더 문제적인 것은 작품의 서술자에 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이는 남편인 청재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즉 실제 이혼의 계기는 ‘외도’이나 그에 못지않은 청재의 경제적 무능과 가장(家長)으로서의 의무를 도외시한 것에 대해 비난함으로써 가정 내 여성이 처한 불편부당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이란 가족에게 큰 죄인인 까닭”³⁰⁾이라거나 “소라는 과부가 아닌데 언제보아야 혼자만 있”³¹⁾다는 서술, 또 청재가 ‘아다령’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서술적 자아의 논평은 독자로 하여금 부부 생활의 불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중인물인 소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독자에게 젠더 감수성의 발현을 요구하는 작가적 의지를 확인하게 한다.

전근대적인 봉건 사회에서 가정의 대소사는 처(妻)의 역할에 맡겨졌다. 이 작품의 제목과 같이 가정 내부의 일은 처의 설계(設計)에 따라 진행되었고, 여기에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가정 안팎의 일이 젠더 역할 규범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내가 병신 아닌 담에야 외입 좀 하면 어떠냐”³²⁾고 당당하게 엄포를 할 정도로 전근대적 부부 관

29) 오태호 엮음, 앞의 책, 321쪽.

30) 오태호 엮음, 위의 책, 265쪽.

31) 오태호 엮음, 위의 책, 274쪽.

32) 오태호 엮음, 앞의 책, 319쪽.

계는 남성 중심적인 젠더 편향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명확하게 시대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근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젠더 평등 인식에 따라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문화가 덜된 우리들의 상투로 하는 말이고 오늘날 이러한 일로 양젓물 사발을 드는 부녀자가 열에 아홉은 된다 쳐도 소라에게 있어선 역시 청재의 방중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동네 여편네들의 상식이 소라에겐 우주의 어느 천체(天體) 하나가 딸에 떨어져 군대도 여에서 더 큰일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³³⁾

나아가 소라는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요구한다. 소라는 자신에게 청재와의 이혼을 제안하는 여순옥의 편지를 받고 나서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소라에겐 생활비가 필요했고, 여순옥이 준다는 일만 원으로 찾집을 해 볼 생각이었다. ‘청재가 가는 바엔 돈이라도 있어야지.’³⁴⁾라는 소라의 판단은 이혼에 대해 여성이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여성의 저항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려 한다는 점에 분배의 원칙이 적용된 경제적 인식과 여성의 결혼법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서」와 「처의 설계」의 두 여성인물은 여성 개인의 인식적 한계를 노출한다. 이들 여성인물들이 작품 전체를 통해 보여주었던 근대적 인식과 젠더 저항적 의지는, 두 작품 모두 결말부분에서 내면화된 봉건적 관습에 갈등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소 위축되기 때문이다. 「계산서」에서 ‘나’는 “받을 것을 다 못 받고 그대로 주저앉는” “모든 아내된 자들”³⁵⁾의 나약함을 생각한다. 「처의 설계」에서 소라

33) 오태호 엮음, 위의 책, 319쪽.

34) 오태호 엮음, 위의 책, 338쪽.

는 청재의 복귀를 수용하고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지향한다. 이러한 작품의 결말은 여성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저하고 다시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 내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봉건적인 젠더 규범을 내면화한 당대 여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는 당시 식민 지배자들의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관습을 법제화함으로써 치안을 강화해 나갔다. 랑시에르의 구분에 따르면, 치안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권력으로 상징되는 어떤 억압의 구조인 것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 치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감각적인 모든 것을 분할하고 할당하고 분배하는 상징적 구성 원리이다. 때문에 모든 치안은 평등을 방해한다. 치안은 뭉이 없는 자, 말할 자격이 없는 자, 썸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배제의 체계로서, 식민지 근대의 법 제도에 의해 여성은 더욱 공고한 젠더 차별적 논리로써 단속되고 배제되었다. 반면에 정치³⁶⁾는 치안이 만들어 놓은 감각적인 것의 질서를 거슬러 감각될 수 있는 것을 다시 분할하고 할당하고 분배하려는 행위이다.³⁷⁾ 정치는 치안 유지의 합의 체제 안

35) 오태호 엮음, 위의 책, 64쪽.

36) 정치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치 자체를 특별한 활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또한 이때 정치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에 배분 자체뿐 아니라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까지 정치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이미 주어진 권력 구조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지라도 주어진 구조 속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는 권력관계의 역학 또는 모든 인간 집단에 존재하는 일종의 권력 현상을 정치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식적인 정치 영역에 참여해본 적 없는 노예의 경우에도 주인과 정치적 관계를 이룬다. 또한 정치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없이 도처에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국가나 정부, 공동체가 아닌 가정이나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치적 관계에 따른 논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은, 상대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여성들과 정치와의 연관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받았다.(김민정 외, 『여성과 정치』, 『젠더정치학』, 한울아카데미, 2011, 22쪽 참조)

37)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적 주체들이 존재하기 위해 거치는 주체화양식’

에서 권력을 점유하는 일이 아니라 그 합의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분배의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일이다. 기존의 지배질서와 끊임없이 불화하는, ‘불일치’의 활동인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합의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 체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³⁸⁾

이선희는 근대적 사상의 기반이 젠더 평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장하였다. “아무튼 남녀 평등 우에 신 연애의 道는 서저야 할 것이야요. 그러기 위하여 실제로 성의 평등, 경제적의 평등 사회 제도상의 諸種의 평등이 다 먼저 서저야 할 줄 아려요.”³⁹⁾ 이는 기존의 사회 체제 내에서 합의된, 규율화된 법과 질서, 제도와 규범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선희의 문학은 이러한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합의된 공동체의 윤리를 의심하는 정치적 사유의 가능성을 재현한다. 이를테면, 이선희의 소설은 평등을 배제한 법 지식과 제도의 체계에 의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의 한계는 여성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⁴⁰⁾, 당대의 젠더 규범을 모방하여 수행하는 여성의 젠더 수행이라는 점⁴¹⁾에서, 나아가 그러한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제시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주체화’란 공동체에서 배제당했던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평등을 주장할 때 가능하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자기 존재를 현시하며 평등을 주장할 때, 평등은 문제적인 것이다. (이재원, 『자크 랑시에르와 68혁명의 유산을 생각하다 :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감성의 분할>』, 『자음과 모음』, 2008 겨울호)

38) 자크 랑시에르, 『미학안의 불편함』, 주형일 역, 인간사랑, 2008, 67쪽.

39) 『女流 文士の『戀愛 問題』會議(諸氏: 盧天命, 李善熙, 崔貞熙, 毛允淑)』,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 5. 1, 321쪽.

40) 김미현(1995), 앞의 책 참조.

41) 버틀러(Judith Butler)는 보부아르의 ‘여자 되기’를 푸코의 ‘권력’ 이론으로 해석해 젠더 이론을 구축했다. 따라서 버틀러에게 정체성이란 사회적 관습과 관행에 의존해 문화적으로 구성된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수행성(performativity)의 “반복성”과 “시간성”을 통해 완전한 동일성이 아닌 차이를 만들어내는 균열을 지적한다. 버틀러는 이러한 ‘젠더적 실천’이 ‘젠더적 주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99쪽)

따라서 모든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규범 앞에서 호명되어 복종되고 실행되는 것이

한 여성의 젠더 평등에 대한 감각의 재배치, 재분할을 요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 법적 배제의 여성과 ‘인정’의 원리

한편 이선희는 본처(本妻) 여성뿐 아니라 첩(妾) 여성을 중심을 하여 젠더 차별적으로 규정, 적용된 당시의 법적 부당함을 보여주었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첩(妾)은 봉건적 사회의 잔존 형태로 지속되기도 했고, 근대적 사회의 새로운 풍속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제2부인’인데, 이선희는 ‘제2부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소설화함으로써 이들 여성의 사회적 비난과 차별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특히 당대 사회에서 제2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던 만큼, 이들의 사회적 위상과 법적 권리 등을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성과를 부여할 수 있다.

‘제2부인’이란 ‘첩이 되는 신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유부남과 동거하는 신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는 신여성으로서 첩이 된 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자유연애로 첩이 된 자신들이 기존의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첩(妾)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과 구별되기를 바랐다. 즉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통해 자신들을 ‘부인(夫人)’의 지위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제2부인’과 관련된 담론은 신여성이 등장한 직후인 1920년대 초반부터 19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이들의 처우(處遇)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버틀러의 주장처럼 젠더가 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성(性)을 둘러싼 행위, 몸짓, 역할 등의 총합일 뿐이며, 사회적 규정과 이념을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젠더의 수행된 결과에 불과하다면 이선희 소설의 여성인물의 젠더 정체성은 식민지 근대 사회가 요구하고 규정한 이상적 여성성일 뿐이다. 당대 사회가 규범화하는 지배적 가치에 따라 욕망하고 표현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이선희의 장편소설 『여인 명령』(조선일보 1937.12.18.~1938.4.7.)에서는 제2부인으로서의 신여성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숙채’는 의사인 ‘김병희’의 간곡한 청혼에 따라 신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가 백일이 갓 되었을 때 남편에게 본처(本妻)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은 이미 열일곱 살에 같은 동네의 처녀와 혼인하여 법률상 아내가 있는 남자였고, 본처와 별거 중에 숙채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한 것이다. 혼인신고를 미룸에 따라 아직 숙채와 아기는 김병희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처(妻)의 권리는 김병희의 본처에게 있었다. 본처의 존재에 대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숙채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남편의 고향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년을 하로가티 굴종(屈從)을 일삼아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부재(不在)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구여성인 김병희의 본처를 직접 만나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숙채의 젠더 감수성이 드러난다. 숙채는 개별적 여성으로서 남편의 본처(本妻)에 대한 질투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집단으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다. 즉 봉건적인 결혼 관계에서 여성의 삶이 갖는 부조리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남편에게 의존해서만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여성의 삶에서 젠더 위계적 질서와 차별적 젠더 규범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감수성은 젠더 저항적 의지로 나타난다. 불행한 개인 여성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여성의 삶을 종속한 남성을 상대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숙채는 곧 “하로밧비 이혼을 해버려야지”⁴²⁾라고 마음먹는다. 남편 김병희가 일본에 출장을 간 사이에 벌어진 사태에 근대적 신여성으로서 숙채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숙채의 결심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숙채는 김병희와 사실혼관계에 있지만, 당시 법률상 부부(夫婦)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였

42) 이선희 외, 『월북작가대표문학』 5, 서음출판사, 1989, 292쪽.

고, 따라서 이혼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젠더 위계적 질서와 차별적인 젠더 규범에 저항하고자 했던 숙채의 의지는 견고한 근대적 법 제도 앞에서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숙채는 이내 “어서 우리도 혼인계를 하고 민적을 올려야지”⁴³⁾로 고쳐먹는다. 자신의 삶을 보증 받을 수조차 없는 현실에 대해 불안과 위기감이 급습한 것이다. 숙채는 남편과 본처와의 이혼을 중용하고 일처(一妻)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숙채의 “호적(戶籍)에 대한 미묘한 욕심”은 법률혼주의 사회에서 제2부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상(理想)이었다.

“난 참 기가 매켜서. 이 일이 버러지고 보니 당신은 미쩌야 본전이구 나만 허탕을 치구 나안즌 것 갓드군요. 당신이야 아무랫든 무슨 일 잇소. 그야 말로 미쩌야 본전이지. 난 요새 남부끄러박게 나갈 수가 업서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 하는 거 가터서.”⁴⁴⁾

숙채는 사실혼관계에서 제2부인이 감당해야 하는 차별적 젠더 규범을 실감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숙채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제2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제2부인은 아무런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때문에 숙채는 서둘러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갓 백일이 된 아들이 사생자(私生子)가 될 지경에 있었으므로 숙채는, 남편과 본처와의 이혼 문제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병희 역시 본처와의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기에 상황은 곧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김병희가 돌연사를 하게 되고, 본처가 그의 뒤를 따라 죽으면서 숙채는 영영 ‘처(妻)’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심지어 숙채와 김병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두 사람의 결혼

43) 이선희 외, 위의 책, 293쪽.

44) 이선희 외, 앞의 책, 296쪽.

관계를 인정했던 김병희의 부모와 친척들마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절사(節死)한 본처를 두고 “열녀로군. 열녀야.”⁴⁵⁾라며 본처의 일부종사(一夫從事)를 칭송하며 추앙하였다. 숙채와 김병희의 사실혼관계는 조선 사회의 봉건적 관습에 따라 인식적으로도, 또 근대의 법률적 제도로써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숙채는 결국 ‘제2부인’이라는 지위마저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당시의 법 규정에 따르면, 이 소설에서와 같이 자유연애를 한 남성의 이중성과 비도덕성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들 남성에게 대한 사회적 문책이나 법적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들 남성은 형법 제225조에 의한 ‘여성을 유혹한 죄’에 걸릴 위험이 없었다. “榮利, 猥褻又는結婚目的으로써略取又는誘惑한는者는一年以上十年以下の 懲役に 處함”이라는 법규는 ‘유혹’이라는 애매한 단어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2부인 문제를 규율하지 못하고 유괴를 한 경우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제2부인과의 합의에 의한 동거라는 점에서 정조 유린죄로 처벌할 여지도 없었다.⁴⁶⁾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자발적으로 남성의 기만에 의해 제2부인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나 보장이 전혀 없었다는 데에 있다. 식민지시대 제2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제이부인이란 법률상으로 전연 처가 아니므로 아무나 처 잇는 남자와 무루늬은 애정관계나 백년의 구둔 약속이나 일생을 통해 생활 할 비용을 공급하겠다고 구둔 맹세를 하였다 하드래도 동거나 부양을 요구치 못 합니다. (중략) 그러나 소위 제이부인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긴요한 생활 상 소용품이나 금전이라도 남편 되는 이는 하등 책임이 없습니다. (중략) 그러나 소위 제이부인에 이르러서는 최초부터 남의 첩이 되고 정당한 부부가

45) 이선희 외, 위의 책, 309쪽.

46) 張承斗, 『誘惑에걸린婦人과法律의 救濟』, 『女性』 제3권 5호, 1938. 5, 79쪽.
楊潤植, 『法律上으로본貞操問題』, 『新女性』 제6권 3호, 1932. 3, 30쪽.

아님을 각오한 나머지임으로 아무리 백년의 굿센 약속을 하여 남편에게 몇 십년간 가진 성력을 다하고 물질적으로 만흔 희생을 하였다 하드래도 남편의 마음이 변한 때면 그의 횡폭한 남성의 발 밧헤 차버림을 밟고도 말것입니다. (중략)

이와가튼 모욕과 학대를 바든 제이부인은 위자료나 사죄 광고 청구를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하소연 할 길조차 막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이부인 된 사람의 최대의 비애라고 할까? (중략) 이것은 일부일부의 제도에 위반되는 것이고 공연한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파괴하는 월범행위로 인정되어 법률상론 도저히 용서를 맞지 못하게 됩니다. 정당한 부부가 아님을 각오한 나머지임으로.

(辯護士 이인, 『法律上으로 본 第二婦人の 社會的 地位』, 『新女性』 제7권 제2호, 1933.2)

위의 설명을 보면 여성을 기만한 남성에 대한 법적 제제가 전무했다는 점에서도 법 제정과 적용에 있어서 젠더 차별적 인식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일부(一夫一婦) 제도의 위반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었다.⁴⁷⁾ 남편은 사실혼관계의 여성에 대해 어떠한

47) 조선사회는 구한말 이래의 혼인법에서 사실혼 관계를 중시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첩에게 처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재산상속권도 인정, 축첩제도를 공인, 이것이 부정된 것은 1915년 조선총독부 통첩24호에 따라 첩의 호적 입적이 금지되면서부터였다. 1921년 8월에 관습 및 제도 심사조사위원회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중혼(重婚) 금지안을 의결한다. 뒤이어 1922년 12월 조선민사령이 개정됨에 따라 1923년 6월에 사실혼주의를 폐지되고 1923년 7월부터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일본 민법의 혼인법이 적용되었다. 법률상으로는 신고제에 의거한 일부일처제가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민법에서 차별적으로 규정되었다. 실제로 아내의 부정이 이혼의 사유 및 간통죄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의 부정은 그것만으로는 이혼의 사유나 간통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법상으로는 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사실상 “어떠한 여자든지 제2부인을 만들어 맘대로 사생자를 낳고 그 사생자의 출생에 의하여 여자는 서자의 모로 남자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 “제2의 남편을 만들 때에는 법률은 곧 그 여자에게 간통죄로 처벌”하는 모순이 있다. (김경

한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법의 내용은 근대적 결혼제도와 법률이 얼마나 젠더 차별적으로 제정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제2부인들은 상대 남성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지식인 남성과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실천했다는 대가로, 제2부인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남성에게 속은 여성의 불찰과 무지로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는 봉건적 가부장사회의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근대의 사상을 실천하는 지식인들의 사고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제2부인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에 양쪽의 문화가 중첩되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몇몇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법은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축첩제도의 폐지, 일부일처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제2부인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구(舊) 문화의 잔재였으나, 숙채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오히려 남성의 비윤리적 행실로써 제2부인의 처지에 놓이게 된 여성도 많았다. 그러나 근대의 법은 이들을 구분해내지 못했다. 제2부인인 여성들에게는 근대의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남성들에게는 종래의 관습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관대한 처벌과 묵인으로 일관했다. 이는 식민지 시대 관습의 법제화가 젠더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

일, 앞의 책, 358~359쪽)

48) 제2부인의 법적 지위는 그들의 자녀의 법적 지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민법 733조는 친자 관계에 대해서 “子는父家에入息. 父의不明子는母家에入息”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첩의 자녀는 남성의 자녀로 입적될 수 없고, 생모(生母)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이때 그 자녀는 사생자(私生子)가 되며, 사생자(私生子)는 친부(親父)에게 부양의 의무를 주장할 수 없고, 상속권에서도 배제되었다. 간혹 친부(親父)의 동의하에 부(父)의 호적에 입적되더라도 사생자(私生子)에서 서자(庶子)로 그 지위가 다소 변할 뿐 법적 권리의 제한과 차별은 여전히 있었다. (이혜선, 『1920~30년대 新女性 ‘第二夫人’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7, 42~46쪽 참조)

49) 이혜선, 위의 논문, 29~41쪽 참조.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피해자 여성에 대해 법적 구제 방법이 모색되어야 했다.

“저 애를 당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 주십시오.”⁵⁰⁾

“나는 생각하고 생각한 꼬टे 당신을 차저왔서요. 당신에게 이러한 청을 가지고 오다니 세상에도 업는 몰염치한 일이라 할지 모르나 이러한 청을 가지고 온 나는 벌써 과거의 유원씨가 알든 숙체가 아니고 다만 저 아이의 어머니로써 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⁵¹⁾

“그런데 또 한가지는 저 아이가 성장한 뒤에라도 행여 당신이 정말 아버지인 체해서는 안돼요. 저 애는 비록 이러한 불행을 겪는다 해도 제 혈통과 명예를 완전히 보전해야 할 겍니다. 공교롭게도 저이 아버지 성과 당신의 성이 꼭 가튼 것도 불행한 가운데 다행한 일이 아니예요? 그저 유원씨는 그 성을 잠깐 빌리기만 하면 애기는 훌륭한이 저이 아버지의 성을 가지게 되는 겍입니다. 내가 왜 이러케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키느냐 하면 나는 한 어머니로써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한의 ‘완전’을 주라는 겍니다.”⁵²⁾

남편의 본처가 ‘만고의 열녀’라는 칭송을 받고 남편과 합장(合葬)된 뒤, 숙체는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김유원’을 찾아갔다. 중병(重病)을 앓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숙체는 유원에게 위의 예문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입적(入籍)과 혈통의 보전이라는 여인의 명령은 봉건적 여성, 가문과 가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여성으로의 퇴행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배제되어 억압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면, 이 작품의 결말은 새롭게 해석해 볼 여지를 갖는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50) 이선희 외, 앞의 책, 336쪽.

51) 이선희 외, 위의 책, 337쪽.

52) 이선희 외, 위의 책, 337쪽.

여성은 ‘평가절하 된’ 혹은 비하된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해 왔다. 지배 집단은 지배적 규범에 의해 다른 집단들을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지배집단의 경험과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규범으로 성립시킨다. 지배집단에 의해 결핍과 부정(不正)으로 간주된 집단은 타자화되고, 지배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배집단에 의해 배제된 ‘차이 집단’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과 강화에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배의 원인을 계급, 인종, 젠더 등과 같은 차이가 지배 문화에 의해 폄하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를 통해 자신들의 ‘차이의 인정(recognition of difference)’을 추구하게 된다. 정체성 인정이론은 왜곡된 문화적 비인정(misrecognition)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차이 혹은 정체성의 긍정적 인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인정을 겪는 구성원은 지배문화에 의해 평가 절하된 집단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재현을 통해, 지배문화에 의해 비하된 이미지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화된 부정적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긍정적인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⁵³⁾

이에 따른다면, 숙채가 자신의 아들을 유원의 호적에 올리되 그의 친부(親父)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명령’하는 것은, 당대 제2부인에게 가해졌던 차별적 인식과 법적 제한에 대한 통한(痛恨)의 요구이자,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의 정당한 자기 권리 찾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적 보호를 받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관습적으로 천시(賤視)되어 온 ‘첩’의 위상을 스스로 재의미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부인의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53) 백미연, 『페미니즘과 정의 : 분배와 인정의 통합』, 고려대 박사논문, 2006, 3~7쪽 참조.

는 여성 자신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요컨대 속채가 요구하는 ‘완전’이란 바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배제의 여성이 사회 부정의를 지적하고 여성의 위계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선희 소설은 바로 법 밖의 여성으로 하여금 상호 인정과 지위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맺음으로써 젠더 정의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4. 결론

제국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식민지인에 대한 풍속 검열과 단속이 엄중했던 식민지 시대, 결혼법과 제도 내에서 불온의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여성에게 주어진 ‘자유’는 조선의 풍습을 위반한다고 비판받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어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자유 이혼 여성은 허영이 가득 찬 소비적 여성이거나 섹슈얼리티의 과잉으로 남편을 배반하는 음란한 여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당대의 ‘자유’라는 신사상, 신사고에 대한 남성 중심 사회의 열광은 곧바로 여성을 단속해야 한다는 위기로 바뀌었고, 다행히도 여전히 지속되어 온 조선의 관습이 근대의 법으로 재포장되어 발효되었다. 조선의 봉건적 젠더 규범에 의거한 관습이 근대적 법률이라는 외피를 걸치고 여성을 규율하고 규제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결혼법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여성의 인권을 구속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었다.

때문에 식민지 근대의 결혼법은 풍속의 단속, 관습의 따른 통제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의 불온성을 양산해냈다. 이때 불온성 판단의 기준은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었고, 봉건적 젠더 규범이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서도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봉건적 규제와 젠더 검열을 강행했다. 신문과 잡지에서 처(妻)를 단속하기 위한 다

양한 훈육과 통제의 수사가 ‘격증(激增)’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혼의 사례들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불온성을 부여하였다. 이혼소송 사례를 보도하는 신문, 잡지의 기사들은 여성의 성(욕)에 대한 강렬한 매혹과 격렬한 혐오라는 남성 중심의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했으며, 젠더 규범의 강화와 젠더 편향적 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축적되어 갔다. 따라서 유교적 젠더 규범에 입각한 여성의 이혼 청구권은 젠더 검열에 대한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양식이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은 여성에게 자유와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여성 지식인이 부정(不貞)한 여성으로, 불온한 여성으로 매도(罵倒)되었다. 즉 여성에게는 근대적 규율과 젠더적 규범의 이중 통제가 부과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인식적 성장과 실천적 행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젠더는 단순히 계급 혹은 지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이다. 젠더는 경제 구조와 위계적 지위 질서에 동시에 기반한 범주이다. 따라서 젠더 부정의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와 인정을 모두 다룰 것이 요구된다. 이는 법과 젠더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적용, 해석에 있어서 젠더 정의는 구현되어야 하며, 젠더 관습에 의해 고착된 젠더 부정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선희의 소설은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이선희는 문학을 통해 조선의 봉건적 사상을 내면화한 구여성이든, 혹은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사상을 체득한 신여성이든 ‘식민지 조선’의 ‘근대’이라는 시대적 모순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인물을 통해서 여성의 관점으로 포착한 근대 법의 한계를 비판함으로써 법 질서에 내재된 젠더적 불평등의 문제를 재현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법 개정에 따라 여성의 이혼 청구권을 소재화 함으로써 비가시적으로 강화되었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개인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한정된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며, 남성적 담론으

로 인식되어 온 법률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젠더 정의의 실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선희 문학의 젠더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정치(politics)란 공동체 내에서 배제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존재들, 몫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정당한 몫의 분배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미 사회 내에서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평등을 내세워 재분배를 요구하는 존재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미학적 성격을 띠게 된다.⁵⁴ 공적 공간 안에서 감각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요구의 정당성을 확장해 나갈 때, 또 그것이 전달되고 전파되며 전시될 때, 미학을 떠난 요구는 기존의 감각 공간을 재분할 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문학은 미학을 떠난 요구와 주장을 전달, 전파, 전시하는 매개가 될 때 정치성을 갖는다. 문학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실게 된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이선희의 소설은 법과 제도에서의 젠더 평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선희의 소설은 당대의 사회에 만연한 젠더 정의의 실현 불가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젠더 불평등을 여성의 일상을 통해 고찰하고 평등의 재정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선희의 문학은 젠더 정치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몫이 없는 자들’, 즉 법률적 위상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모순의 지점에 놓인 여성인물들을 통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지되지 않은

54) 정치적인 것이 항상 미학과 관련을 가지는 까닭은 감각적인 것의 나눔이라는 미학의 체제를 통해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랑시에르의 미학론은 미학적인 것을 인식론과 결합시키고, 또 그 인식의 체제를 정치적인 것과 연결시키면서, 미학과 정치의 관련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이택광, 『랑시에르의 미학론』, 『문학수첩』, 2008 봄)

영역을 보이게 하고, ‘잘못된 보편주의적 지배 집단의 규범에 의해 현실의 부정의만 강화하고 소수자를 억압적으로 동화⁵⁵⁾시키고자 한 식민지 근대의 친족법에 대해 비판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선희 외, 『월북작가대표문학』 5, 서음출판사, 1989.

오탈호 엮음, 『이선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09.

2. 국내논저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320쪽, 358~359쪽.

김미현, 「성장과 생존의 두겹쓰기-이선희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5, 355~396쪽.

김민정 외, 「여성과 정치」, 『젠더정치학』, 한울아카데미, 2011, 22쪽.

김선희, 「여성의 범주와 젠더정체성의 법적 수행」,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12, 15-16쪽.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 검토」, 『철학탐구』 2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113-139쪽.

백미연, 「페미니즘과 정의 : 분배와 인정의 통합」, 고려대 박사논문, 2006, 3~7쪽.

서정자, 「이선희소설연구 : 인물의 삼각구조와 상징을 중심으로」, 『원우논총』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5, 53~86쪽.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 박사논문, 2013, 171~174쪽.

55) 이은경, 앞의 논문, 280쪽.

- 오탈호,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젠더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175~199쪽.
-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6, 127~156쪽.
- 이선옥, 『이선희-집과 거리의 긴장의 미학』,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7, 337~352쪽.
- 이은경,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분석하며』,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2010, 280쪽.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439~441쪽.
- 이혜선, 『1920~30년대 新女性 ‘第二夫人’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7, 29~46쪽.
- 장두식, 『근대적 결혼제도 정착과정과 소설의 관련양상』, 『국문학논집』 제21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2~53쪽.
- 전경옥 외3인,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71~72쪽.
- 조은희, 『이혼의 자유와 그 한계』,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137쪽.
- 홍양희, 양현아,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사회와 역사』 제7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171쪽.

3. 국외논저

- 자크 랑시에르, 『미학안의 불편함』, 주형일 역, 인간사랑, 2008, 67쪽.
-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99쪽.
-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시대의 정의』, 김원식 역, 그린비, 2010, 195쪽.

Abstract

The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custom and political nature of gender in colonial period

-with novels by Lee. Sun-hee as the center-

Kim, Youn-Jung

It became a social problem for women to demand lawsuit of divorce in colonial period, which w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divorce was so emerged that it was suitable subject matter for people to criticise decadence and self-indulgence of the modern woman. Especially it was considered the problem that the cause of divorce was related to sexuality of woman, thereby the woman who defected from the marriage system or repudiated was predicated as abnormality and immorality and castrated or excluded the social status and the independence of political nature.

The novels by Lee. Sun-hee in colonial period demanded the gender equality in laws and institutions. Lee. Sun-hee made an issue from where the impossibility of realizing the justice of gender that was rampant in that society, and thereby she considered the inequality of gender through days of lives for woman and demanded redefinition of equality and redistribution of equality. Therefore, the characters of novels by Lee. Sun-hee are the political entities because the characters make the recognized area in social community be seen by reenacting people on their own who has no share and make their voices loud by inviting the beings who were excluded.

After all, the novels by Lee. Sun-hee with materialization of the claim for divorce made an issue for inequality of gender that was intensified invisibly. Also they reenacted political independent woman by criticising the contradiction of marriage laws and limitation of legislation which seized with woman's point of view through woman characters. It is beyond the critical mind that is limited to independent entity of woman, it is also evaluated to represent will of realization for the justice of gender by borrowing legislation which was recognized as masculine discourse.

Key words : Lee. Sun-hee, Divorce, Distribution, Recognition, Gender, Politics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